

김선화 / 7월 / 2차 종합 모의고사 / 2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67796	20	12.5	19.5	11	63	1	3.23%	31
567542	17.5	11.5	20.5	13	62.5	2	6.45%	
565688	17.5	12	17	11.5	58	3	9.68%	
567582	17.5	11.5	20	9	58	3	9.68%	
567828	17.5	11.5	19	9.5	57.5	5	16.13%	
566789	17.5	11	18	10.5	57	6	19.35%	
566861	18.5	9.5	18	11	57	6	19.35%	
565973	19	10.5	19.5	7.5	56.5	8	25.81%	
567532	17.5	11	17	11	56.5	8	25.81%	
566944	17	8	20	10.5	55.5	10	32.26%	
565657	17.5	9	16.5	11.5	54.5	11	35.48%	
566795	16.5	10.5	19.5	8	54.5	11	35.48%	
566920	14.5	11	18	11	54.5	11	35.48%	
567843	17.5	11	14.5	11.5	54.5	11	35.48%	
565686	16	10.5	17.5	10	54	15	48.39%	
566912	15.5	12	18	8.5	54	15	48.39%	
567168	16.5	11	14.5	12	54	15	48.39%	
567427	14.5	10	18.5	11	54	15	48.39%	
567891	15.5	10.5	18	10	54	15	48.39%	
566707	17.5	9	19.5	7.5	53.5	20	64.52%	
566835	16.5	10	17	9	52.5	21	67.74%	
566905	15	11	16.5	10	52.5	21	67.74%	
566571	17.5	10.5	16	8	52	23	74.19%	
567789	14.5	8.5	18	10.5	51.5	24	77.42%	
566563	16.5	11.5	15	8	51	25	80.65%	
567494	14.5	7.5	17.5	10	49.5	26	83.87%	
567533	15.5	7.5	17.5	8.5	49	27	87.10%	
567383	16	8.5	17.5	7	49	27	87.10%	
567363	16.5	9.5	14	8.5	48.5	29	93.55%	
567236	15	9.5	15	7	46.5	30	96.77%	
567044	13.5	7	13	9.5	43	31	100.00%	

번호

[문제-1]

I 실문 (1)

1 문제의 문제

무의 기입이 주성 원 불 아나 권해지시어
창작성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함지 문제된다.

2 기입 의의

기입은 음악과 과학적 원, 어문 저작물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 저작물을 함의 가능하다.

3 기입 저작물성 판단

(1) 저작물 의의 (제 2조 제 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창작성 판단기준 (실험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지는
당초에 높은 것은 모방한 것이 아닌 창작적
표현이 있는 사상·감정이 대한 창작적 표현.
드러나 있는지 기준 판단한다.

(3) 기입 저작물의 경우 실험제

기입은 여러 사람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각 사람이 창작적 개성 갖는지 별론 아나
개별 창작자들이 일정 의의 시나리오 하에서
선해. 배열됨으로써 종합되어 그 전체로
다른 기입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는지

기전 판단한다.

㉠ 사안

무의 게임은 영웅 해킹, 조별 인제인 등의 캐릭터인
양성 구획의 판계별 조와 승서, 해상성 등
다양한 캐릭터가 무의 게임 영웅의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되어 배정·조동되어 있는 바,
창작자의 창작적인 사상·정신이 개한 창작성
표현이 들어있고 그 자체로 다른 게임과 차별되는
창작성 개성 갖는다 한 것인 바, 창작성 인정되어
저작권에 인정된다.

㉡ 실용 해결

무의 게임은 창작자의 사상·정신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에서 보호될 수 있다.

II 실용(2)

1 문제의 해결

무라 2간 계약 해지 방식이 따라 이용 시
계약이 불리한지, 그에 따라 조의 이용 해지
무효인 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게된다.

㉢ 이 사건 유원의 적격자 - 2 (필요 내용 추가)

㉠ 계약의 해지 방법 위임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해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으로 이행하려는 목적,
당사와 상대방 당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합당하게 이익을 함께 해석하여야 한다.

- (2) 양도 계약인지는 이용 허락 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이점)
계약 내용이 명확하며 그에 대한 조이나,
이용 권한 여부등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바,
판례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있고 이용허락으로
해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안

무라 2간 음원 공표 계약 조항에는 음원 1곡당
매월 100만원 대가를 지급받고, 무라 2에게
음원방을 음원을 갖고 사탕화하는 수 있는 권리인
판권을 매월 방식으로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저작권재산을 양도한다는 명시된 표현 있는 바,
자문가 2이 창작한 이 사건 음원을 2에게
양도하고 귀속된 (제 22 조항, 제 103), 무라 2에게
2이 대한 이용 허락을 해를 것으로 보아 -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원의 권리자는 2이다.

4. 무라 2의 피상 역부 - 소

- (1) 무라 2에게 이용 허락 해를 관한 소 - 소

무라 2 이 사건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

불가하여 제 46조 2항 따라 해당 발명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할 수 있을 뿐
또에게 이용 허락료를 정당한지 없다.

(2) 제 이용으로 부당이득 취했는지 여부 - 조항
무의 조항에 대한 이용 허락 무효인 바, 저작권인
없이 게임에 이 사건 음원 삽입하여 출시
함으로써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한 또에게 부당이득
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인정

① 저작재산권 무효에 양도되지 않았고, ② 또에게

발한 이용 허락 무효인 바, ③ 이 사건 음원의 이용으로

(양도) 부당이득 취하였으므로, ④ 또 주장 부당하다.
2 이 사건 음원의 저작자 - 2

(4) 저작권 원시적 취득 및 무효성 문제 (제 22조 2항 제 10항)
저작권은 저작물 탄생한 때로부터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형식이나 이행 불요한다.

(5) 사망

2이 창작한 음원은 그의 개성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는 바 저작물 해당하고,

2이 관한 권리는 원시적으로 2에게 귀속된다.

대한 저작 재산권을 양도 가능한 바 (제 45조), 2이
계약에 의해 또에게 저작재산권 양도한 것인지 묻는다.

5. 실용 해결

이 사건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그와 별, 독립된
부담하라. 10.5

II. 실용 (3)

1. 문제의 소재

주요 실용은 특허 이용을 한 경우에도
반환 책임 지는지, 이 경우 그 액수 산정
문제이다. 10.5

2. 주 실용인 경우 부담이득 반환 책임 지는지 여부 - 적극

(1) 부담이득 반환 책임 (민법 제743조)

법률상 원인이란 과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과인에게 위해 가한 자는 그 이익 반환해야
한다. 10.5

(2) 실용로 이익 받은 경우 배제

자신의 권리를 받고 그에 기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익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이익이 허락하는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므로, 실용인 경우라면 여전히
부담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10.5

(3) 사안

주요 이 사건 실용은 이용한 경우 권리 없는
자이로 실용 이 사건 실용 지각자는 무조건 상환

하여 이 사건 음모에 관한 정당한 이용하라는
 발상과도 다른 점으로, 이 사건 음모에 이용하라는
 발상과 인연 없이 이용 받고 나서 그에
 관해는 본 바, 부당이익 반환책임 있다

3 부당이익 반환 액수

(1) 부당이익의 발생 취지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을 갖는 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는
 최초 행위 시부터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익 발생한다.

(2) 권리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취지

부당이익 반환 액수 산정 시 실지를 상당액으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

당초 2026년 1월 1일 기일 출하를 약속 계속적으로
 이 사건 음모에 이용하였고, 2026년 5월 31일 2차
 이익과 게임에서 음모 소제하기까지 5개월 간의
 부당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며, 2차 이용하라는
 계약을 통해 마일즈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받은 것을 합산하여 총 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해결

① 조이 생이어서 부당이익 반환 행위 지며, ② 조이
500만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문]

[문제 -2]

I 실문 ①)

1 문제의 해

무의류이 이 사건 구권가목을 가한 실문
원상회 유지하리 상문 창조성 부가한
구권적 자상문 해당하느지 문제된다.

2 구권적 자상문 의의 및 판단기준

(1) 구권적 자상문 (제 53조 1항)

원 자상문을 변경, 폐지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 자상문을 포함한다.

(2) 판단기준 ①

구권적 자상문이 해당하느지는 원 자상문을 가한
실문적 역사상 유지하리,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조물
될 수 있는 것으로 부가, 증감 구하여 새로운
창작성 부가되었는지 가한 판단한다.

3 사항

(1) 원 자상문 실문적 역사상 유지 여부 - 작



무의 주는 이 사건 구상으로, 베이비사크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C-F-C-G'로 분류
가능한 패턴으로 구상된 모든 장갑을 대표
사용하여 이 사건 구상자의 창작적 표현력이
인위적이 실용적 유사성 여하의 것으로 인정된다.

6) 새로운 창작성 부가한 것인지 여부 - 예

① 무의 동일한 모든 장갑이 도출한 항목
장갑의 리본과 양생트와 기타 액세서리를 추가한 것
② 음악 지각물의 창작성도 유사성을 표현하는 형식
가장 적합한 것으로 비추어 리본, 화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인 사상 창작에 대한 표현
표현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확인).

③ 1) 가장 장갑의 리본은 동일 링크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도출·배치·기타·알려진 기호
등은 전적으로 별의 소인하기 구상에 불과하며
II) 무의 가장 일부분의 리본에서 양생의 변화
있었으나 2 변형의 양이 많고 양이 2 변형
양생. 양생으로 한정한 것이 가져온 양생으로
새로운 창작성 부가되었다 볼 수 없다.

4 실용 해결

무의 주는 음악 지각물 (제42 권)로 창작성 표현
가장 적합한 리본, 화형을 비추어 양생. 양생으로

하이로 이어지는지 검토 판단해야 하는 바,
 원 사업장과 실질적 유사성 유지여부라도 새로운
 창작성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차점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차점 작품을 선택
 불가하다.

II 실용 (2)

1. 문제의 소재

무의 근에 이 사건 평가로 볼 그 동등기 있는
 동등기 표현이 있는 경우, 그 동등기 이 사건 평가
 유사한 것인지는 별로, 무 작품에 유사한 것
 아는지 문제된다.

2. 침해 원고의 의의성 판단 방법

① 의의성 판단 기준 확립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는 별개로 의의성 판단
 시에는 작품을 보는 보는 부분 뿐만 아니라 국악원
 법에 의해 보는 것이 못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

② 의의성에 추정 확립

대상 작품에 대한 전문 가능성과 그 대상
 작품과의 유사성 양적로는 경우, 의의성에 추정된다

③ 형식적 유사성 있는 경우 확립

특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이 다른 사람
 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 즉 현저한 유사성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자문으로도 악의관계 인정 가능하다

(4) 음악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음악 저작물의 경우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드러나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선율, 배리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하되, 이때 양곡, 작곡 작곡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

(1) 전문 가능성 인정 여부 - 1곡

그는 국내 아인이 행사에서 사용할 음료를
 제작하기 위해 사권에 여러 작곡가들을 연가
 진행, 준비, 조사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2019년경
 무이 아비 유튜브로 발동된 무이 곡도 조사하였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 가능성 인정된다.

(2) 유사성 인정 여부 - 1곡

① 무이 곡과 2의 곡은 모두 2개 전부터 구성되어
 강요중인 '베이비사크'를 가요 편곡한 것으로
 이 사건 작곡가가 갖고 있는 특정한 표현방식을
 가요로 사용하는 수 있고, 무이 곡과 2의 곡 사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② 무이 곡에는 이 사건
 작곡가에 없는 특정한 가락이 있으나 이는 2의 곡에서

예비지 안고, 여러 이 사건 권리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여러 방식과 동등 권리 시
별리 쓰이는 약어를 사용해 편광한 것에 대해
특히 권리 권리 권리 사이에 유사성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결

권리 가능성 인정되나 유사성 인정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 부정 불가하다.

4 실용 해결

그의 동등은 권리 권리 의지해 작성되지 않았다.

[결]

[문제 - 3]

I 실용 (1)

1 과학적 재료를 의지 및 판정기준

(가) 의지 (제 1항)

연 재료를 변형, 편광 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항목을 의지하며, 동작성 재료를 변형한다.

(나) 판정기준 확정

연 재료를 기초 하여 동작성 유사성 평가하기,
사회 동작성 새로운 재료가 될 권리 수량, 중량, 길이
새로운 환경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2 2 주상 과장성 검토

(1) 실용적 유사성 여부 - 검토

P 카피는 이 사건 실용권을 기호로 하여 시공된 바, 실용권 실용적 유사성 유지된다.

(2) ABCD 과장성 부가 여부 - 검토

시공 과장에서 A 연경은 일보 하중 크기가 10cm 안팎으로 다소 변경되었으나, 이는 시공 과장에서 필히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 변형에 불과하고, 사상·공정에 대한 과장성 표현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본질 - 2 주상 부당

P 카피는 이 사건 실용권에 사본 과장성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과장적 과장물 아니라 과장시 A의 과장적 과장물에 해당하여 무의 관의 침해한 바 없다는 2 주상 부당하다.

II 실용 (2)

1 문제의 소재

P 카피가 이 사건 실용권의 복제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실용권이 공상 과장물 특정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리는 무의에 귀속되는지 문제된다.

2 이 사건 실용권과 P카피의 관계 - 복제물



(1) 복제 이익 취지 (제 23 조 2호)

인사: 복제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이 재산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물물의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다른 부속, 증설된 경우 배제

원 재발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를 아니라 그
부속 증설 추가설치라고 원재발을 재제작하거나
증설한 인치하는 경우 복제 해당한다

(3) 사안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P카레 사용되었다 A의
요청에 따른 일회 동영이 되었으나 원재발을 제작에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일한 동영상에 건물
복제물을 해당한다.

3 이 사건 설계도 재발명성

(1) 건물재발명 (제 42 조 1호)

건물물: 건물에 관한 모든 것 설계로서 그 밖의
발명재발명을 의미한다.

(2) 모형재발명 (제 43 조 1호)

자: 설계도: 양도 그 밖의 모형재발명을 의미한다.

(3) 기능적 재발명 창조성 관련 배제

건물물 기능적 재발명 그: 형태가 제한되는

제안이 있다. 그 공헌이 창작자의 독자적인 창작력
개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저작권성 인정 가능하다.

(A) 사안

이 사건 설계도는 특정 저작물에 해당하면서 설계도로
권리자권을享有하는데, 기능적 과제로 그 형태
일부 제한되나, 독특한 내외부 디자인으로 관공 명소가
될만큼 그 공헌이 창작적 개성 인정되는 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는 정도를 넘어선
창작성 인정되어 저작권성 인정된다.

4 이 사건 설계도 저작자

(1) 저작자 의의 및 무방상주의 (제23조, 제10조)

저작권은 저작물 생성한 때로부터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별도로 양도·양허 할 수 있다.

(2) 창작자주의의 예외 (제92)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로 법인 등에게 저작권 귀속된다.

(3) 위임계약의 경우 제93 조 유출 가부

1) 학설

① 중재위원 중립적 의사에 의해 작성 이루어지므로
유출 가능하리 하되, ② 부재위원은 창작자주의의
예외인 바 인정하기 해설.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판례



① 제 9조는 창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인 바 권고 사항
제약의 범위까지 유추정용할 수 없다 하여 원형
권고 부정 하나. ② 권리자의 기행. 제각 자금 등과
하여 창작자의 인정받을 뿐이 제각 위법한
창작자는 마치 권리자만이 위해 제각. 남용한 즉
권리자 명의로 권리는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강요

여기 제9조 항목으로 강제 정용 불허한 바 위법한 타당
후행하다.

4) 사안

A로부터 강요 살기 양도 위원장이 살기로 권고 후
A에게 권고하였으나, 여의 작곡 인정한 위법한 타당
사안을 감리하여 제 9조 유추 정용 불허한 바
창작성 표현을 할아 이 사건 살기도 인정된 무언지
저작권 연식권 지속된다. (제 23 조, 제 10조)

5) 실용 해결 무결론

① 이 사건 살기도이 불결론이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살기도는 권리자를 강제하듯 저작권
인정되며, 그 권리자는 무이다.

6) 실용 137

1 문제의 해



디자인의 사용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든
 실질적 유사성 인정하는지, 침해물이 해당하는지
 그와 또에게 주장 가능한 침해사유 존재한다.

2 디자인의 사용에 실질적 유사성 문제 - 3점

㉠ 침해 대상에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문제

대상 디자인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에는 침해
 물건 형식이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관습적으로 인식된다.

㉡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 문제

기능적 디자인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해당
 디자인이 모든 수단에 포함되고, 변형이 있다면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원하는 장점에 불과하다면
 실질적 유사성 인정 불가하고, 그와 다른 디자인은
 실질적 유사성 하에 유사하지 않음 판정해야 한다.

㉢ 사안

디자인의 사용에 바닷길 인접한 카페 건물로
 바다 전망이라는 기능적 요소 인해 건물 앞쪽
 형태가 일정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디자인은
 모두 1개 층 하부 매수 역시 2개 층 상부 매수의
 외장 각도로 틀어줘 양면 하부이며 내부 계단
 여가 형성된 개방, 방화벽 등 공간, 유리벽
 등 여러 부분에서 세부적 구성 특징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점을 주시면서 디자인의 의미는 찾아볼

이러한 점, 특허는 하복 매스가 포함되어
 9차에는 상복 매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부속 4에 불과한 점 역시 양 관의
상복 매상 인정권

3. 특이 주장할 수 있는 항해 수 불 권

(1) 2에게 주장 가능한 항해 수

1) 전사권 예외 취지 (제 192)

지각자는 원보·복제물 전사할 권리 가진다.

2) 권의 이미 위해

일반인들이 무작위 자료가 관할할 수 있다.

전사, 기사하는 것 배제한다.

3) 사안

2은 P 특허 항해물인 5차권을 전사함으로써

전사권 (제 192) 항해 주장 가능하다.

(2) 2에게 주장 가능한 항해 수

1) 복제 예외 취지 (제 23 22항)

전송물의 경우 전송을 위한 모의 또는 실제적으로
 이를 전송하는 것 포함한다.

2) 사안

2은 P 특허 복제하여 무 복제권 (제 162) 항해

주장 가능하다.

(3) 특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2차 국문 특허 재심판결 항해 행위 한 바,
항해 권리 행 (제 123조), 항해배상 의무 (제 125조) 등
가능하며, 항해권 그 통해 제 126조 항 본 따라
또한 이하 권역 등치안원 이하 불공 병과할 수 있다.

[문]

[문제 - 43]

I 실문 (1)

1 불계 이익 (제 23 조 2호)

인해. 불산 그 밖에 방법으로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해물이 인정하는 것 말한다.

2 컴퓨터 장비의 일시적 불계의 경우 위해

위장을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 일시적
불계 되는 경우에도 제 23 조 2호 불계에 해당한다.

3 사안

2차 무 프로그램과 2차 프로그램 같이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비합법화된 무 프로그램이 그대로
일부 2차 컴퓨터 장비 남아 있게 되는 바
이는 위장을 유해물이 인정할 것으로 위장권행사
불계에 해당한다.

II 생문 2)

1 문제의 해

이용 허락 범위 관련하여 무라 그사이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이 문제이며, 일사불행 제1항을
해당 안건이 문제된다.

2 이용허락 범위 해당 여부 - 33

4) 재판을 이용허락 (제46조)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 받은 것은 그 허락
받은 이용 방법·조건 범위 안에서 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5)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문제

이용 허락 범위의 해석은 이용 계약에 관한 당사
의사 해석 문제인 바, 당사자의 계약 체결 경과
계약조항 검토하여도 불능, 계약으로 예상되는 사실의
통상적 범위, 당사자 간정한 사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 사안

무엇을 그에게 그 회사 직원 중 최대 20명만 10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라이선스
방식의 계약 통해 이용허락 해주었고, 20명 허락받은
아동 발명은 그에 한정된 것이 바. 후 프로젝트인
게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약 20% 더

구체화한 것과 같은 효과 얻어진 바, 이용 하한
계양이 200명 정도 사용 계획을 부가한 목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용 하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실시권 복제 제한 사례 해당 여부 - 예

(1) 저작물 이용 규정에서 실시권 복제 (제35조(2))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동 시 원작하고 동일한 것
처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컴퓨터에서
실시권 복제하는 것은 있다. 또한 그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하는 것은 저작권 아니다.

(2) 원작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위해 원작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복제하고 인정되며, 인정되는 컴퓨터 ^{복제}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저작 실시권 복제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3) 사본

① 200명 미만 200명 정도 사용 가능한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복제 프로그램 전체 사용함으로
그 과정에서 비합법화된 프로그램이 완전히
컴퓨터에 양호 해 일괄 자동 컴퓨터 상에 실시
복제가 이루어졌다. ② 이러한 일괄 복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이 복제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정된 · 허용된 복제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니며, 여러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된 하대 동시 사용과 수 초과하는 무 프로그램이
함께 남아 결과적으로 그이 상에 기재한 라이선스보다
약 20% 더 거대한 용량을 얻는다. 일사적 불제가
그 자처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거의 자량된 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5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하결

① 하대 동시 사용과 수 초과하는 실행 행위는 계약
통해 이용허락 받은 범위 벗어나며, ② 일사적 불제가
제35조의 2
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끝]

- 이 하 여 백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